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48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조정훈·조경태·인요한

박형수 · 김용태 · 김미애

김대식 · 김민전 · 이인선

최수진 · 정성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안학교는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나, 현재 다수의 대안학교에서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교육정보시스템은 일반학교를 기준으로 구축·운영 되고 있어 대안학교에서 이를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안학 교의 여건을 고려한 교육정보시스템 이용 환경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립·공립의 대안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대안학교가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학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60조의3).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초 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① -
국립・공립의 초등학교・중학	<u>초등학교·중학교</u>
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대안
각 학교별로 학교회계(學校會	학교
計)를 설치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생 략)	제60조의3(대안학교)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
	교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
	등 소관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
	육감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및 여건에 맞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거나 대안학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u>수 있다.</u>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